

2020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예활거할 제안 프로젝트 공고

서울시·영등포구에서 주최·주관하는 ‘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’은 예술생태계(창작활동)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.

영등포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은 지역의 예술가, 활동가, 기획자가 본 사업의 실행 주체로서 창작자밀집지(문래창작촌 일대)의 이슈(의제)를 직접 제시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[예활거할 프로젝트]를 운영합니다.

[예활거할 프로젝트]는 2020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아래의 목적에 따라 유형별 지원 합니다.

① 창작공간의 안정화

- 창작자 및 활동가가 문화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.

② 창작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구축

-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.(창작(물)의 유통&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)

③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

- 대상지의 다양한 주체(소공인, 주민 등)에게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.

[예활거할 프로젝트]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주체(예술가, 활동가, 기획자)가 함께 협력·참여하여 예술생태계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에 대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주체 중심의 공동 해결과정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.

공고 내용

□ 사업명 : 예술거할 프로젝트 - 제안프로젝트 (공모형)

□ 추진목적

- 지역의 예술가, 활동가(기획자)가 주체적으로 예술활동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위한 움직임 지원을 통해 영등포 예술생태계 창작환경 마련
- 지역 주체의 공동실행의 마중물 지원을 통해 예술생태계 지속성 마련

□ 프로젝트 유형 : 아래의 4개 프로젝트 유형 중 택 1

- ① **창작공간의 안정화** : 창작자 및 활동가가 문화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환경 조성
- ② **창작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구축** :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
(창작(물)의 유통&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 지원)
- ③ **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** : 대상지의 다양한 주체(소공인, 주민 등)에게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
- ④ **기타** : 위 유형 외 본 프로젝트의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□ 사업기간 : 2020년 6월 ~ 2020년 11월 이내

※ 본 사업의 전체기간에 따라 프로젝트 운영기간 조정 가능

□ 사업의 (공간적) 범위 : (행정동)문래동-영등포동-당산1동



□ 사업규모 : 총 사업비 160백만원(총일억육천만원)

□ 지원규모 : 프로젝트 당 사업비 10백만원 ~ 30백만원 내외 지원

○ 프로젝트 당 협력 단체의 수 및 사업의 내용 & 규모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

※ 제안프로젝트의 규모 및 내용, 참여자 규모에 따라 심사 시 사업비 조정 예정

○ 지원예산의 편성 :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맞추어 편성

□ 지원내용 : 영등포 예술활동(창작활동)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
주체 제안프로젝트 지원

□ 지원대상 : 영등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·기획자·활동가 또는 단체

□ 프로젝트 추진 유형

① 단체 + 단체 또는 단체 + 개인 : 지역 단체 공동기획을 통한 프로젝트

② 개인 + 개인 : 지역 내 개인 간 공동기획을 통한 프로젝트

③ 개별 단체 또는 개인 : 공동기획이 아닌 개별(1개의 단체 또는 개인 1인) 프로젝트

| 프로젝트 추진 유형 | | (추진유형별)공모신청 제출서류 | 교부조건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① | 단체 + 단체 단체 + 개인 | 단체 협약서 (참가신청서 붙임⑤ 참조) | - |
| ② | 개인 + 개인 | 보조금 교부를 위한 단체설립 예정 협약서 (참가신청서 붙임⑥ 참조) | 비영리 단체 등 |
| ③ | 1개의 단체 1명의 개인 |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| - |

- (공통) 모든 프로젝트 추진대상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수행이 가능한 요건(개인 사업자 또는 비영리단체 등)을 충족하여야 함

- ②유형 : 공모 선정 후 비영리단체 등의 등록을 통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행
(※ 단체설립 절차 및 필요사항은 공모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)

- ③유형 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보유 시 PDF 파일로 제출 / 미보유 시
사업선정 이후 제출(※ 절차 및 필요사항은 공모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)

□ 우대사항 (*증빙서류 제출 필수)

- ① 지역 단체(또는 개인) 공동기획을 통한 프로젝트 운영 우대 (*증빙서류 제출 필수)
 - ※ 단체 협력 협약서 제출 또는 신규 단체 구성 예정 계획이 있는 네트워크 우대
- ② 선행 제안프로젝트 발표에 참여한 자 또는 단체
- ③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인(단체) (*증빙서류 제출 필수)
 - ※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주민등록등본, 공간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단체(개인)

□ 프로젝트 기획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

- 문래동 등 영등포구 전체 예술지형 파급효과 고려
- 소수의 기획자, 워킹그룹 뿐 아니라 보편적 예술인 고려
- 시민편드, 자산화 등 제안의 경우 장기사업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제시
- 사업취지에 맞게 예술인 중심의 추진 예술+기술+개방성으로 예술생산 기능 강화
-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예술인 활동기반 조성에 주력
-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여 예술인 안전망 구축 및 예술생산에 대해 고려
-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본 사업 기간(3년) 및 이후 지속성에 대한 방안 제시

□ 제외대상 : 예활거할 프로젝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

- 단순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그 목적활동
- 예활거할 프로젝트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파티, 모임, 회의 진행
- 창작자(예술가 등)의 개인 작업을 목표로 하는 개별 창작 발표, 일회성 행사 사업
- 프로젝트 운영 목적이 아닌 단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적 및 일상경비의 사용
 -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용, 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비, 공과금 등
- 공공지원금 수혜(구청, 문래예술공장 등) 후 집행, 정산 등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·개인
- 동일 사업으로 당해 연도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
 - ※ 중복사용 등 이중정산이 발생한 경우 환수조치하며, 향후 3년간 영등포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제한됨
- [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□ 추진일정

| 구 분 | 일 정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참여자 모집공고 | 5.26.(화)~ 6.14.(일) | -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공고문 배포 |
| ↓ | | |
| 사업설명회 | 5.29.(금) (3시~5시) | - 사업소개 및 설명 (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) 및 질의응답 ※ 사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관계자 사전접수 |
| ↓ | | |
| 제안서 신청/접수 | 6.3.(수) ~ 6.14.(일) | - 이메일 접수(sj1234@ydpcf.or.kr) - 제출서류 |
| ↓ | | |
| 1차 서류검토 | 6.18.(목) | - 제출서류 검토 및 심의 |
| ↓ | | |
| 2차 심사 | 6.23.(화) | - 제안참여자 인터뷰심사 · 외부전문가 및 제안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· 필요시 PT요청 가능 ※ 심사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※ 세부일정 별도 공지 |
| ↓ | | |
| 최종 결과 발표 | 6.25.(목) | - 최종 선정 결과 발표(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) - 지원금 신청 안내 |
| ↓ | | |
| 선정자 워크숍 | 6.30.(화) 예정 | - 사업소개(최종 선정자 필참) - 지원금 신청&정산 안내 (보조금 시스템 사용 안내) ※ 워크숍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|
| ↓ | | |
| 예활거할 프로젝트 실행 | 7월~11월 | - 프로젝트 실행 |
| ↓ | | |
| 사업종료 및 정산 |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~11.30.(월) | - 해당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- 11월 30일까지 최종 제출 |

□ 공모 일정

- 공 고 : 2020년 5월 26일(화) ~ 6월 14일(일) (www.ydpcf.or.kr 공고)
- 설 명 회 : 2020년 5월 29일(금) 15시~17시 /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
 ※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
- 접수기간 : 2020년 6월 3일(수) ~ 6월 14일(일) 자정(24시)까지
- 심 사 : (1차검토) 2020년 6월 18일(목) / (2차심사) 2020년 6월 23일(화)
 ※ 2차 심사 시, 공모 제안 신청자 필참
- 최종결과 : 2020년 6월 25일(목) (※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)
- 선정자 워크숍 : 2020년 6월 30일(화) (선정 시 워크숍 필참)

□ 서류접수

- 접수기간 : 2020년 6월 3일(수) ~ 6월 14일(일) 자정(24시) 까지 (이메일 도착분에 한함)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sj1234@ydpcf.or.kr)
- 문 의 :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수진 (☎02-2629-2236)
- 제출서류 : (공통)필수 제출서류 + (추진유형별)제출서류

[파일제목 : 2020 예활거할 제안프로젝트 참가신청_프로젝트명_대표자명]

(예시 : 2020 예활거할 제안프로젝트 참가신청_영등포구 예술문화시스템 구축_김수진)

※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자필 서명 혹은 날인 후 스캔파일(.pdf) 1부
- 원본파일 한글파일(.hwp) 1부

(공통)필수 제출서류

- 붙임 ① 제안프로젝트 신청서
- 붙임 ② 단체(참여자)활동 소개
- 붙임 ③ 사업계획서
- 붙임 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

(추진유형별)제출서류

- 붙임 ⑤ (추진유형① 해당 시) 단체 협약서
- 붙임 ⑥ (추진유형② 해당 시) 보조금 교부를 위한 단체설립 예정 확약서
- 기타 - (추진유형③ 해당 시) 사업자등록증 / 고유번호증
- 추가 - 영등포 소재 증명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공간 임대차계약서 등 (*해당 시)

□ 지원사업 선정 (심사방법)

| 구분 | 1차 서류심사 | 2차 인터뷰심사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방식 | 제출서류 검토 | 발표 및 질의응답/제안자 참여 심사 |
| 심사 기준 | 사업의 적합성(30) / 사업실행력(20) / 협력구조 마련(20) /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(30) / 우대사항(가점 최대 10) | |
| 선정 | 총 사업규모의 1.5배 내외 선정 | 최종선정 |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[붙임③]사업계획서-Ⅲ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 및 역할에 작성된 참여자는 모두 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
 - ※ 본 사업의 집행기준에 따라 인건비 편성 가능. 활동보고서 작성 必
 - ※ 참여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가 미지급 될 수 있음
-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자료는 대외 홍보자료, 결과보고서 등 공식자료로 활용 가능
- 활동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별도 조명, 음향장비, 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의 장비는 임차사용을 권장(장비 구매 불가)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
 -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(해당 프로젝트 종료 후 15일 이내)
 -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
- 선정 이후 당초 계획의 중대한 변경, 활동일정에 추진 불가, 수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- 활동 추진 시 ‘본 프로젝트의 집행기준’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며, ‘서울시 및 영등포구 보조금 운영 지침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
- 선정 단체는 추진단 월례회의 및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모니터링,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재단의 사업결과물 제작에 협조(책자 혹은 온라인 콘텐츠, 아카이빙 등) 하여야 함
- 선정 사업 수행 시, 주최/주관을 표기해야 함

□ 지원금 교부 및 정산

- 지원금 교부 (※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사용 예정)
 - 지원금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선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
 - 보조금 교부를 위해 최종 선정 후 사업비 교부신청서, 보조금통장 및 연동 체크카드 개설 후 사용
 - 사업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중간 정산 후 2차 교부 가능
- 지원금 정산
 - 해당 프로젝트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(프로젝트 정산 마감기한 엄수, ~11월 30일)

IV

성과결과 및 환류 체계

□ 성과 공유 및 환류

- 예활거할 프로젝트 연계한 모니터링 추진 (※ 별도 계획 상신 예정)
- 예술활동 포럼 진행을 통한 성과 공유 및 환류
- 성과평가에 따른 계속사업 대상으로 차기년도 지원 예정

□ 기대효과

- 지속가능한 영등포 예술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기여
- 삶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자 스스로 창작촌의 현안을 인식하고 해결 기대
- 본 프로젝트 참가자의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센트리피케이션 등 자발적 사회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제안 및 실천의 역할부여로 주체 중심의 해결과정 모델 정립

- 붙임 : 1. 예활거할 프로젝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부.
2. 예활거할 제안(공모)프로젝트 신청양식 1부.
3. 2020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사업소개(간략) 1부. 끝.

붙임 1.

○ [예활거할 프로젝트] 비목별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

- 보조비목 구분 : 활동비, 사업운영비

| 비목 (예시) | 집행기준 |
|-----------|---|
| 활동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실행인력(대표제안자 포함)의 활동에 대한 경비 - 총 사업비의 30% 이내 편성 - 월 단위 활동비 지급, 활동기록부 작성 必 |
| 사업운영비 | |
| 홍보인쇄비 | -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, 간판,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비 |
| 소모성물품구입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※ 프로젝트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으로 비용을 편성할 수 없음 |
| 지급임차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·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, 건물 등의 청소비(실비) 포함 -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(lease)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|
| 식비(다과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- 식대(다과비) 1인 1만원 이내 편성 |
| 사례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의사례비 등 -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예술가,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- 2시간 이내 : 5만원 / 2시간 초과 : 10만원 (**운영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 증감가능) ※ 활동비 지급대상자(프로젝트 실행인력)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■ 강사비 및 공연비 등 -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는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- 주강사(1시간 12만원, 2시간 20만원) / 보조강사(1시간 5만원, 2시간 8만원) (**운영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 증감가능) ※ 활동비 지급대상자(프로젝트 실행인력)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|
| 공공요금 및 제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우편물 발송비 - 전화 및 회선 사용료 등 |

※ 본 지침의 지급기준은 준용하되, 사례비(회의비, 심사비, 강사비 등)의 경우 프로젝트 운영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의 증감가능